

인도네시아

수출현안 / 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
(2014년 11월 17일) / 자카르타 aT센터

구분	핵심 내용
기타	☐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인증법 개정

항목	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	☐ 주요 내용 ○ ‘14년 9월 25일 할랄제품 인증법(Undang-Undang Jaminan Produk Halal) 개정 내용이 의회를 통과 ○ 할랄인증기관이 민간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이관되어 정부가 주도 - (현행) MUI(Majelis Ulama Indonesia)라는 민간기관에서 - (향후 5년 후) BPJPH(할랄제품 인증 실시기관 /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)라는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이관되어 할랄인증 실행 ○ 현행 할랄인증은 권고사항(자율적)이나 의무사항(강제사항)으로 변경 - (현행) 축산부류를 제외한 식품 등은 권고사항으로 할랄인증 없이 수입 가능 - (향후 5년 후) 식음료, 의약품, 화장품, 화학제품, 생물학 제품, 유전자 변형 제품, 그리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할랄인증 의무사항으로 변경 ○ 시행시기 - 이번 법안의 정식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은 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 - 국회인준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관련 모든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 (Implementation Regulation) 20개가 새로 제정될 예정 - <첨부>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인증법 개정내용 요약 ☐ 시사점 / 대처 방향 ○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제조업체, 수출업체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필요 ○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할랄인증을 의무화 할 경우 시행 시 큰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관련법의 세부 시행내용 등을 전파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야 함 ☐ 발표 일자/ 출처 : ‘14년 9월 25일 / 할랄제품인증법 (Undang-Undang Jaminan Produk Halal)

인도네시아 할랄제품 인증법 개정내용 요약

1

주요 개정내용

□ 2014. 9. 25일 할랄제품 인증법(Undang-Undang Jaminan Produk Halal) 개정 내용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할랄인증기관이 민간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이관되어 정부가 주도
 - (현행) MUI(Majelis Ulama Indonesia)라는 민간기관에서
 - (향후 5년후) BPJPH(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/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)라는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이관되어 할랄인증 실행
- 현행 할랄인증은 권고사항(자율적)이나 전체 의무사항(강제사항)으로 변경
 - (현행) 축산부류를 제외한 식품등은 권고사항으로 할랄마크 미인증 수입 가능
 - (향후 5년후) 식음료, 의약품, 화장품, 화학제품, 생물학 제품, 유전자 변형 제품, 그리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할랄인증 의무사항(강제사항)으로 변경
- 시행시기
 - 이번 법안의 정식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 세부 시행령은 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
 - 국회인준후 30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관련 모든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 (Implementation Regulation) 20개가 새로 제정될 예정

※ <첨부2 참조> 할랄인증법 개정내용 관련법 요약

□ 현재 할랄인증 관련 개정법이 의회 통과이후 인도네시아내의 유럽, 캐나다, 미국, 일본, 한국 등 각국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함

○ 공청회 등을 통한 공동의 문제 제기사항 도출

-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도네시아 헌법정신에 위배
- 기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산업표준 제도 (SNI)와 상충
- 최근 발표된 Negative List와의 불일치
- 비관세장벽 철폐가 골자인 WTO 협정 위배여부

○ 향후 대응 계획

- 설득력있는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대통령 재가가 난 법안 최종본 입수후, 상기 제기된 4개 이슈 고문변호사 법률검토 의뢰가 필수 (비용은 각 상의 분담)
- 대통령에게 IBC 이름으로 각 상의대표가 연명하여 Letter 를 제출.
- 할랄서티의 범위와 기준이 확대되는데서 오는 부패확대에 주목하여 앞으로 있을 KPK + IBC 세미나에 본 이슈를 주의제로 상정

- 제47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 수입되기 위해서 할랄인증은 의무사항(강제사항임)이며 해외 할랄인증은 새로운 할랄인증기관인 BPJPH와 상호 협력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만 인정된다고 하고 있음
 - 다만, 현재 인정하고 있는 해외기관에 식품원료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에 따라 최종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허용 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함
- 한국이슬람교중앙회를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으로 등록하여 신뢰성 있는 인증기관으로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
- 사전에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제조업체, 수출업체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
-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할랄인증을 강제화 할 경우 시행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관련법의 세부 시행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야 함

할랄인증법 개정법 주요내용 요약

- 출처 : Undang-Undang Jaminan Produk Halal, AMCHAM Indonesia, Jakarta Post, MUI -

□ 1장 : 일반규정

○ 제1조

- 법률에 적용되는 제품은 식음료, 의약품, 화장품, 화학제품, 생물학 제품, 유전자 변형 제품, 그리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물건들임. 이러한 제품들은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할랄제품 절차(PPH/Proses Produk Halal)라 함.
- 이 할랄제품 절차(PPH)는 원재료, 가공, 보관, 포장, 유통, 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임을 보장하는 절차임.
- 발급된 인증과 라벨은 할랄제품인증(JPH / Jaminan Produk Halal)이라 불리어 지는데 이는 국가에서 새롭게 만들 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(BPJPH /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)에 의해서 발급되어짐.
- 이 인증은 MUI의 FATWA(이슬람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는 종교적 유권해석)를 토대로 발급되어 지며, 할랄인증 제품 검사는 할랄감사기관인 LPH(Lembaga Pemeriksa Halal)에 의해 시행되어 짐.

○ 제4조

-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고 유통되어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이 필수임.

□ 2장 : 할랄제품인증(JPH) 기관 조직

○ 제5조 : 정부는 장관급 수준에서 인증의 조직에 대한 책임이 있음.

○ 제7조 : 조직화중에 정부는 관련부처 및 기관, 할랄감사기관(LPH), MUI 와 협력

□ 4장 : 사업자(할랄인증 필요업체)

○ 제23조

- 사업자는 할랄제품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정보, 교육, 사회화를 받을 자격이 있음.
- 할랄인증을 받음에 있어 빠르고 효율적이며 차별을 받지 않는 서비스와 적절한 가격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음.

○ 제24~25조

- 할랄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음 ;
 - 정확하고, 분명하며,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함.
- 이미 할랄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음 ;
 - 이미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할랄 라벨을 부착해야 함.
 - 제품이 지속적으로 할랄일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함.
- 공통사항
 - 비할랄 제품으로부터 할랄제품의 생산, 보관, 포장, 유통, 판매, 그리고 할랄제품 제공에 대한 도구, 장소, 위치를 분리해야할 의무가 있음.
 - 할랄 감사 고용과 제품구성의 변화에 대해 BPJPH(할랄제품인증 실시기관)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음.

○ 제26조

- ‘non-halal’ (비할랄) 제품 생산업자는 할랄인증 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, ‘non-halal’ 라벨의 부착이 의무임.

○ 제27조

- 제25조를 어길 경우 서면경고, 벌금 또는 인증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.
- 제26조를 어길 경우 구두경고, 서면경고, 그리고 벌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.

□ 5장 - 할랄인증 획득 절차

○ 제29~45조

- 사업자는 할랄인증 신청서를 작성해 BPJPH에 제출
- BPJPH는 LPH(할랄감사기관)에 제품에 대한 검사 요청
- 할랄감사는 검사와 그 결과보고서를 LPH에 제출
- 이는 다시 BPJPH로 전달됨
- BPJPH는 MUI에 인증발행 최종여부 확인 후 발행

□ 6장 - 국제적 협력

○ 제47조

- 모든 수입된 제품들은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하며 인도네시아에 수입되기 위해서 할랄인증은 의무사항임. 해외 할랄인증은 새로운 할랄인증기관인 BPJPH와 상호 협력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만 인정됨

○ 제48조

- 해당 법규를 따르지 않을 시 제품 리콜조치가 취해짐.

□ 9장 : 처벌

○ 제56조

- 사업자가 할랄인증 획득 이후 제품의 할랄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벌금 20억 루피아의 처벌을 받음.